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『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 일부개정에 따라(대통령령 제24302호, '13.1.9. 공포)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 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외 추가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 신설

- 월 250,000원 특수업무수당 지급(2013.1.1부터 적용)

나. 중앙행정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외 추가 지급 조항 신설

- 월 300,000원 직급보조비 외 추가 지급(2013.7.1부터 적용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관련부서와 협의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입법예고(2013. 6. 14~6. 23) : 별도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2011,12.16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보건진료직렬에게 지급되던 활동 장려비(월200,000원) 지급이 중단되었으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기준이 2013.1.9일 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월 25만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조항 신설과

○ 우리군 발전을 위해 중앙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외 추가로 월30만원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조례로서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

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새 정부 정책기조인 '안전한 사회' 구현을 뒷받침하는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개편·강화하여 군민의 행복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과 명칭변경(1)

○ 건설방재과 → 안전건설과로 명칭변경

나. 안전관리 업무 강화

○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·조정

○ 인적·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입법예고(2013. 6. 19 ~ 6. 23) : 별도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새 정부 정책기조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명칭 변경과 소관부서 사무조정을 통하여 군민의 행복 및 생활과 관련된 인적·사회적 재난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로서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·인사사무 처리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423호)에 의거 2013년도 지방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직급별·직렬별 정원 조정

3. 주요내용

가. 직렬·직급별 정원 조정(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)

○ 일반직 : 455명 → 461명(증6)

- 7급 : 141명 → 143명(+2)
- 8급 : 109명 → 113명(+4)

○ 기능직 : 65명 → 59명(감6)

- 7급 : 12명 → 10명(△2)
- 8급 : 19명 → 18명(△1)
- 9급 : 30명 → 27명(△3)

나.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(변동없음)

다.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

○ 일반직 공무원

구 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현 행	1%이내	6%이내	28% 이내	31% 이내	24% 이내	10% 이상
조 정	0%	0%	0%	+1%	+1%	△2%
개 정	1%이내	6%이내	28% 이내	**32% 이내**	**25% 이내**	**8% 이상**

○ 기능직 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
현 행	6.5% 이내	19% 이내	30.5% 이내	44% 이상
조 정	+0.5%	△2%	+0.5%	+1%
개 정	**7% 이내**	**17% 이내**	**31% 이내**	**45% 이상**

○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(변동없음)

○ 별정직 공무원(변동없음)

4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(직급별 정원) 및 같은 규정 제30조(정원의 규정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입법예고(2013. 6. 19 ~ 6. 23) : 별도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기능직 중 2013년도 지방사무 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험에 합격한 지방사무 기능직 6명(7급 2명, 8급 1명, 9급 3명)을 감원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6명(7급 2명, 8급 4명)을 증원하는 직급 및 직렬별 정원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